

## (추가) 신탁부동산 공매(입찰)공고

공매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이 계류되어 있기에 “신탁부동산 공매(입찰)공고”에 부연하여 추가 공고를 합니다.

### □ 공유물 분할 소송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 513818 공유물분할
- 원고 : 광천종합건설(주)
-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산54-5번지 (공유지분 1703분의 573)
-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가 1130/1703, 피고가 573/1703의 각 비율로 분할한다.
- 공매 목적 부동산의 낙찰자는 매매잔금을 납부하는 날에 본건 소송을 수계(피고 지위 승계)할 수 있도록 낙찰자의 비용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본건 소송의 대응은 우리자산신탁(주)가 수행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소송 대리인 선임 및 소송 결과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유치권 및 건축인허가권

공매 목적 부동산에는 (주)보아스글로벌홀딩스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펜스가 존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공매 목적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보아스글로벌홀딩스가 건축주 지위로 관할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및 건축인허가권은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